

## 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07월 02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  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 개정면주민센터 담당자 : 고 은아 문의전화 : 063-454-7195 )

| 성명<br>생년월일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| 지연 신고사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임*현<br>1963-12-02 |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문화길 | 무단전출    |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20년 06월 25일

개정면장

